

---

# 입 법 정 보

---

2018-1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인사혁신처).....	6
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8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
8.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12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3
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1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9
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1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19. 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1
2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	21
2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청).....	22
2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5
2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6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7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0
2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2
2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4
2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4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6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
3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9
3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40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0
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41
3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42
3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3
4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4
4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5
4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6

# 정부입법 예고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6. 11.                      ● 마감일자 : 2018. 7. 23.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체계 재정립,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5489호, 2018. 3.20. 공포). 이에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안 전반에 걸쳐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 변경하고, 아울러 경제협력권,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광역협력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용어 변경함
  - 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등을 제시함 (안 제16조의2제1항)
  - 다. 면적 및 반경, 정주여건, 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 라. 시·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
  - 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인·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허가 기간에 준하여 단축함 (안 제16조의5)
  - 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함 (안 제20조)





○ 주요내용

- 가.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구체화(안 제3조)
  -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등을 간접 지급하는 경우로 파견사업주나 용역계약의 상대방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
- 나.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안 제5조)
  -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
- 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조직·운영 사항 구체화(안 제6조~제12조, 제66조~제73조)
  - 법에서 위임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 추가 심의사항으로 장애등급 결정 및 개정 등을 규정하고, 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도록 하며, 면직 또는 해촉 사유,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
- 라.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지급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등)
  - 1) 급여별 결정 주체에 따라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를 구분하여
    - i)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단이 지급토록하고, ii) 공단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이 심사 후 지급토록 함(안 제13조)
  - 2) 급여별 구체적인 청구서류·추가 필요 절차 등은 해당 급여에 따라 별도로 정함(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제38조, 제40조, 제47조~제48조, 제52조~제53조)
- 마. 장애연금 등급 개정 등 구체화(안 제41조~제43조)
  -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본인 신청 또는 인사혁신처장 직권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이 가능토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은 장애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토록 규정
- 바.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56조~제57조)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법에 따른 연금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분리 개정 등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1)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별도의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개편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정(1960년)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문구조를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연금제도의 이해도 제고

※ (현행) 8장, 4절, 5관, 153개 조문 → (개정) 9장, 6절, 99개 조문

나. 급여산정, 기간인정, 이자가산 등의 처리기준 합리화

1)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시 적용되던 재직기간 감축 계산식을 삭제하여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제16조의4 삭제, 안 제5조)

2)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 선고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안 제42조)

3) 채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가산 지급 이자는 급여 감액 지급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 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산정(안 제62조)

다.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신청구 방법 및 절차 구체화

1)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기존의 분할연금의 청구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41조)

라. 기타 제도개선

1) 기존에 구체화되지 않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시책 수립·시행, 퇴직지원사업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장)



○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안 제12조)

- 1) 골재채취(하천골재 등) 후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안 제14조의5, 별표2)

- 1) 골재채취능력의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 2)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공시기한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토록 함
- 3) 바다골재 채취능력 평가 중 시설·장비 평가 시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부두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시설·장비에 접안시설 추가 필요

다.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제도 개선(안 제17조의3)

- 1) 단지관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지관리비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 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지관리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

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14.
- 마감일자 : 2018. 7. 24.

- 민간업체의 공동체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골재채취허가 시신청한 공동체에 속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여 '15년 도입된 민간업체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의 예외대상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바다골재채취업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선별·세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염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바다골재채취업과 선별·세척업등록기준 중 염분측정시험실을 삭제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공동체 골재채취단지 신청자 우대제도의 도입(안 제28조)

1) '15년 법률 개정으로 민간업체(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의 골재 채취단지 지정신청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역비 등 초기투자비용에 비해 유인책이 부족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신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선투자 및 골재채취단지 신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예외대상 삭제(안 제33조)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m<sup>3</sup>)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17.12.19 개정, '18.6.20시행 예정)

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바다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가 채취한 골재를 직접 선별·세척하지 않는 경우, 제염시설은 불필요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2) 바다모래의 염분 측정은 작은 크기의 측정장비로도 가능하므로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등록기준 중 별도의 시험실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 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6. 14.                      ● 마감일자 : 2018. 7. 25.

○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체로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체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의 발굴·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4항)

- 1)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년에 대한 우수기업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안 제8조의5)

- 1) 정부는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에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조사 범위 명확화 (안 제18조제2항)

- 1) 당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라.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부칙)

- 1) 법률 유효기간을 ' 18년→' 23년으로 연장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 18년→' 21년으로 연장함

##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25.

- 오염토양을 제 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한 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 아래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하려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토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 지원절차를 마련(안 제5조의4)

- 1)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 지원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원 대상여부·규모, 비용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도록 함.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 1) 현행은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화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화를 실시하고 있음.
- 2) 하지만,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아래 토양이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3) 이에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한 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아래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정화 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다. 토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2항)

- 1)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등 토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 관련 인수인계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



입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한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3)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다.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및 토양오염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2호 부터 제24호까지, 별표 3 및 별표 7)

1)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하고, 크롬 및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지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안 별표 3 비고 제7호)

1) 현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된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을 관리하기 어려움.

2) 이에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나 오염 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25.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업무 범위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1)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 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추가
  -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 1)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 1)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

### 1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25.
- 주요내용
  - 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1)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2) 평가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1)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2)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의 목적,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산림복지 전문가 고용유지 및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규자과정과 경력자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13조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2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1) 등록 처리기간(20일→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15일→10일)
- 2)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업무의 신청기관 등을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1호서식)

- 1)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30일→20일)
-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 복지진흥원으로 변경

## 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25.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특성에 맞게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3조제6항)
    -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 나.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13조제3항)
    - 유아숲체험원 면적 규모의 50/100 범위 이내
    - \* 현행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별표3)
    -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50/100 범위 이내(단, 최소 배치 인원은 1명 이상)
    - \* 유아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명 ~ 3명 배치(별표3)
  - 다. 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

## 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25.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 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당

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이거나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 1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25.
-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 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기본재산 처분허가 불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2)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6조제1항)

## 1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15.                      ● 마감일자 : 2018. 7. 30.
-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일부 개정(' 18.3.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동시설을 규정
  - 나.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영리 단체를 규정

## 19. 폐기물시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18.                      • 마감일자 : 2018. 7. 30.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간 소통부재로 인한 민원, 행정 불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과 감시요원의 겸직금지로 역할을 투명하게 하는 등 법령정비과제 추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 (안 제5조)
  - 나. 폐기물수수료 관련 가산금 징수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 (안 제8조)
  - 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등(안 제10조)
  - 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 추가 등(제17조의2)
  - 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육영사업 등 추가(안 제22조)
  - 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는 자 추가(안 제25조의2)
  - 사. 권한의 위임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의제 조항 삭제(안 제30조)
  - 아. 벌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신설(안 제30조의2)

## 2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6. 18.                      • 마감일자 : 2018. 7. 30.
-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기 등 절차(안 제2조 ~ 제4조)
- 나.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소방장비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6조)
- 라.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안 제8조)
- 마.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2조)
- 바. 인증대상 소방장비 및 인증기준(안 제13조)
- 사.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안 제14조 ~ 제29조)
- 아.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및 통합구매(안 제31조 ~ 제33조)
- 자.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의 종류 등(안 제34조)
- 차. 신규 채용 소방공무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개인보호장비(안 제36조)
- 카. 소방장비 운용자 자격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42조)
- 타. 소방회전의 항공기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안 제43조)
- 파. 소방장비 점검의 종류 및 정밀점검 대상 장비(안 제44조)
- 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 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범위(안 제47조 ~ 제50조)
- 너.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안 제51조)
- 더.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및 종합계약(안 제52조)
- 러.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 권고 및 현장조사(안 제53조, 제54조)
- 며.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6조, 제57조)

2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6. 18.
- 마감일자 : 2018. 7. 30.
-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

청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전문검사반 편성,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세부사항 등(안 제2조)

- 1) 현행 「소방장비 관리 규칙」상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은 시·도지사가 기한 내 수립을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소방장비 관리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도지사는 소방청장이 수립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실적 평가를 위하여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3) 시·도 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 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소방장비의 사고현황 및 분석 등의 관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신청, 심사, 인증기관 지정 등 세부 운영 절차(안 제4조 ~ 제12조)

- 1)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장비 설명서, 부품 명세표, 시료 등을 인증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서류·제품·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
-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청장은 심사를 한 후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 3)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관련된 기록을 5년간 보관
- 4) 인증의 표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인증 표시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를 위한 전문검사반 편성(안 제13조)

- 1) 소방장비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기계, 섬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소방기관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임

- 2)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검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 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등을 전문검사반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다른 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을 전문검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 3) 전문검사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품질 소방장비의 납품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및 소방자동차 적재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1)

- 1)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분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소방장비별 보유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도록 함

마.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안 제16조 및 별표 3)

- 1) 현 「소방장비 관리 규칙」상 소방자동차는 예방점검과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예방점검은 일일·주간·특별점검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방자동차 이외의 소방장비는 별도의 체계화된 점검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 2) 소방자동차는 기존과 같이 소방자동차별 점검부에 따라 점검을 하되, 소방선박과 소방항공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별도의 점검부를 신설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방장비는 지역 실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 3) 정밀점검은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기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기를 차종별로 명확히 하는 한편, 불용 예정이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는 점검을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안 제17조)

- 1) 소방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공무원은 관리하는 소방장비가 고장이 있거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언론보도·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

사.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18조)

- 1)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춰 소방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2) 소방청장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

아.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안 제19조)

- 1)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안 제20조)

- 1)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 장려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2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6. 18.
- 마감일자 : 2018. 7. 30.

### ○ 주요내용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영 제40조)

- 현재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주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동시지급 대상에 성장유망업종 외에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

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영 제40조)

- '18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신설되어 시행중이나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과 달리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복지원 가능하므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 합리화(영 제104조의4)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최종 수령하는 금액이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단축급여를 산정할 때, '단축 시작일 직전 임금' 이 아닌 '인상된 임금' 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6. 18.
- 마감일자 : 2018. 7. 30.

### ○ 주요내용

가.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규칙 제94조)

- 최근 고용위기지역(6개 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연장 등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급여수급자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급대상 요건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광역구직활동비 산정기준 완화(규칙 제111조)

-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범위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6. 19.

• 마감일자 : 2018. 7. 30.

○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안전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수습지원본부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

-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총괄·조정을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 대응·수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2)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고수습 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수습지원단 파견 규정 보완(안 제14의2조)

- 1) 현행 수습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전에도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현장수습 지원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또는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8조)

-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란 명칭은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 2) 정부의 재난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에 맞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로 명칭을 변경함.

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 규정 보완(안 제32조)

- 1) 현행 정부합동 안전 점검 대상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 시설에 대한 점검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2)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 1) '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재난관리평가 규정 보완(안 제33조의2)

- 1) 현행 재난관리평가 규정은 평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2) 재난관리평가 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가 평가하도록 규정함.

사. 재난관리자원 범위 확대(안 제34조)

- 1)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는 물자, 자재 및 장비로 한정하고 있어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격리시설인 음압병동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재난관리자원의 범위에 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재난의 신속한

수습활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간 장비 및 장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규정 보완(안 제34조의5) 1)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규정에는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도록 규정함
-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작성·운영을 위하여 조정·승인 및 지도·감독·관리·점검에 대한 권한 일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응급조치 규정 보완(안 제37조)

- 1) 대규모 재난 시 많은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나 사전 통보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조기수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2) 체계적인 자원봉사 조정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확보와 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사항을 응급조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차. 재난 예보·경보체계 규정 보완(안 제38조의2)

- 1) 재난 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재난 예보·경보 전달은 가능하나, 민방위경보 발령 시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이용한 전달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2) 민방위경보 발령 시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각종 교통정보 등 전광판을 활용하여 재난 예보·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자연재난 우려 시 주차차량 강제견인 및 통행제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제42조, 제43조)

- 1)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 차량 견인 또는 차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매년 차량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자동차 등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견인시킬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차장 등에 대해서 차량 통행 제한 및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안전문화운동 재정지원 근거 보완(안 제66조의4)

- 1)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관·단체의 재정력 부족으로 활동이 제한적임.
- 2)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규정함.

파. 안전정보의 공개 근거 마련(안 제66조의9)

- 1) 안전 점검 결과를 포함한 건축물·시설물 정보가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안전권·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축물·시설물 정보 및 안전 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안 제66조의11)

- 1) 현행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규모 이상 축제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2)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6. 19.                      • 마감일자 : 2018. 7. 30.
-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8. 3. 18. 공포, 10. 19. 시행) 됨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가능한 시설

-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제2항제2호 신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복지시설
- 나. 송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안 제18조의2, 제46조제1항제2호, 별표3의2, 별표3의3, 별표4 개정)송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복구비예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함
-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1항 개정) 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과 같이 660㎡이상 설치할 경우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도록 함
-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및 제23조제4항, 제5항신설조의2제1항 개정)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감면기간이 도래하기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함
-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신설)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및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심의 대상에 추가
- 바.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47조제7호 신설)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포함) 중부수적인 토석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복구의무를 면제함
- 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1호)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려는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전용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 아. 공공기간 등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설치 시 수수료를 면제(안 제51조제4항제2호, 별표4의2나목, 별표5제3호자목 신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도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함
- 자. 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의 권한 위임 사항을 수정(안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제6항 단서 개정)동부지방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울릉도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허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명확히 함

- 차.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예외 대상을 추가(안 별표 4 비고제1호가목 및 별표 4의2 가목 개정)국방 군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히 함
- 카. 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대한 허가기준 수정(안 별표4 제1호 마목 개정)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기존도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타. 전통사찰이 산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5 제3호 바목 개정)
- 파. 매장문화재발굴 후 목적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5 비고 개정)
- 하.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함(안 별표8의2 개정)

## 2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6. 19.                      ● 마감일자 : 2018. 7. 30.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를 넓히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구 의무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며,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개선(안 제10조제2항 개정)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산업기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표고분석도를 제출토록 함
  - 나. 토석채취허가기준시 세부 허가기준의 산출방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ha당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산출

방법은 산지전용허가를 준용하도록 함

- 다.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신고시 변경신고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항, 제30조제2항 개정)
- 라. 명의 변경 신고시 복구비 예치시기를 수리전으로 명확화(안 제40조 제6항)명의 변경시 승계인은 복구비를 신고 수리 전에 예치하도록 명확히 함
- 마. 복구의무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 개정)복구 의무 면제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 함
- 바. 복구설계서 승인 완화 기준 적용 포함(안 제42조 및 별표 6 개정)
- 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안 별표1의4 개정)풍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산물 재배, 산불예방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함
- 아.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1의3, 별표6 개정)복구 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훼손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으로 명확히 하고, 산림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구 시덩굴류 중 칩은 제외토록 함

## 2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5. 31.
- 마감일자 : 2018. 7. 30.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377호, ' 18.2.21 공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술료 징수 범위 등 법률로 상향된 일부 조항 삭제(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 나. 법률로 상향되지 않은 기술료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 이전 신설(안 제9조제1항)
  - 다. 기술료 감면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화

## 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6. 19.                      ● 마감일자 : 2018. 7. 30.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2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6. 20.                      ● 마감일자 : 2018. 7. 30.
-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

(안 제69조제1호)

-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 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육·해상 오염원 정밀조사와 강우량에 따른 채취제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0.                      • 마감일자 : 2018. 7. 30.
-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법 목적으로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예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법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 방법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설치 및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안 제8조)
  -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 항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제15조)
  - 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중 보안 방법시설 공사종별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안 별표 1 제3호자목)

###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0.
- 마감일자 : 2018. 7. 30.

○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 방법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방법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 외에 주택성능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34조제2항)

1)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하나, 예외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과도한 건설비용 발생

2) 이에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②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세대 내전기용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④ 개별난방설비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3)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으로 공급 활성화 등 도모

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 제39조)

1) 보안 방법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 방법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안 제58조)

1)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0.

• 마감일자 : 2018. 7. 30.

○ 지상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차장법」 제정 당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택배 이사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공동주택 보안 방법 시설로 기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 주요내용

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안 제6조의2제2항)

1)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 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하여 주민 간 또는 주민 및 업계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요구되고 있음

2)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각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

3)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 등 안전과 주거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일부 업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나. 공동주택 보안 방법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안 제9조)

1) 보안 방법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

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 방법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로 허용범위를 확대

- 2)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장애에 따라 영상정보가 단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와 함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초 수선주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급 등 별도의 설치 기준을 규정

다.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2)

###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6. 20.                      ● 마감일자 : 2018. 7. 31.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하여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상세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신설(안 제66조의7)
    -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의 이름, 구매자의 생년월일, 재화등을 구매한 이력으로 정함(안 제66조의7조제1항)
    - 2) 구매자정보를 제공 요청하려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결제내역,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목적 포함)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7조제2항)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6조 관련 별표2 제2호 머목)

1) 법률 개정으로 항만시설소유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 마련 의무(제31조의2제2항)와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52조제1항제18의2호) 부과조항 신설에 따라 법률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설 의무의 성격이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인 점, 의무이행 주체가 항만시설소유자인 점, 위반시 항만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점 및 위반행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시 80만원, 3회이상 위반시 150만원으로 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도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6. 21.

● 마감일자 : 2018. 7. 31.

○ 범죄예방 및 보안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영상기록의 분실·도난 방지조치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과 해상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명칭 수정(안 제13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제6호)

1)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



○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3조의 ‘법 제6조제2항제7호’ 를 ‘제6조제2항제8호’ 로 수정 (안 제3조)
- 나. 물자협력 관련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물자협력의 대상 품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8조 신설)
  - 1) 물자협력의 대상품목은 군수품관리법 상의 군수품으로 하되, 군사 기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배치된 품목은 제외
  - 2)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고 절차는 국방부령에 따라 진행
  - 3) 부대 임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민감도가 낮은 일부 통상품의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에 사전보고를 전제로 별도 승인 불요
  - 4) 외국정부와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별도 협정에 따라 물자협력 사항을 규율했다면, 그에 따라 시행

3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6. 21.
- 마감일자 : 2018. 7. 31.

○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 및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시설의 신고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451호, 3.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 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



## 4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6. 22.
- 마감일자 : 2018. 8. 1.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 규정(안 제46조제1항)
    -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과정의 범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 주민참여수단 확대(안 제46조제2항)
    - 주민이 정해진 공모 기한 외에도 상시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사업공모 제안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를 주민참여 수단으로 명시
  - 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 (안 제46조제3항)
    -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반영하도록 함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 보장 노력 의무(안 제46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참여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안 제4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바. 평가의 세부기준(안 제46조제6항)
    -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 규모 등 재정적 여건과 인구밀도, 고령화 정도 등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4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6. 22.
  - 마감일자 : 2018. 8. 1.
-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광고 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